

제 Ⅲ 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1-1. 공장설립 승인 취소 후 제조시설 설치허가 신청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질의내용】

- 본 사업부지는 당초 2011년 04월에 ○○실업이 공장부지로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를 득한 부지(당초 협의면적 11,901㎡)이며, 이후 부지 증설면적 1,159㎡을 증설하여 총 면적 13,060㎡으로 00시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득하였음.
- 2014년 04월 부지조성 및 건축준공승인 중 부득이한 관계로 00시에서 공장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임
- 이후 부지계획(건축증축) 변경으로 공장 제조시설설치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을 한 상태이며, 부지내 일부 절성토가 수반되는 건축계획(증축)을 계획하던 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는 00시의 통보를 받은바 이에 해당 사업부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되는지

【답변내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을 시행 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의 허가를 위한 절차 중 하나임.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후 공장설립 승인을 득하였으나, 이후에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였다면 기 협의한 사전환경성검토도 해당 사업의 허가내용 실효와 함께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공장설립 승인 취소 후 ‘공장 제조시설설치 및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사업의 허가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함.
- 아울러, 2011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시와 비교하여 건물 2개동(739㎡)만 추가되며 단순제조업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별표6에 따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간소화하여 작성할 수 있음.

1-2. 하천구역 내 입목제거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질의내용】

- 하천구역 내 수목제거 사업 개요
 - 대상지역 : 하천구역, 제거면적 : 약 80ha
 - 질의① 벌채신고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 질의②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사업으로 수도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답변내용】

- 질의 ①에 대하여
 - ‘신고’만을 통해 시행하는 사업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 질의 ②에 대하여
 - 「수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수반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제7호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가 7,500㎡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됨.
 - 다만,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에 포함 될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1-3. 업종 추가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질의내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면서 건설폐기물을 파쇄, 선별, 세척하여 모래를 생산하는 기존공장(부지면적 : 28,981m²)에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하여 레미콘제조설비를 설치하고자 함(동 공장은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은 적이 없는 공장임)
- 기존공장으로서 레미콘공장 업종추가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답변내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득한 사업부지 내에서 업종변경 및 추가 등을 할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하지 않고 공장설립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업장의 경우, 기 허가 부지 내에서 신규 업종을 추가할 시 추가되는 신규 업종의 허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각호에 따른 규모(계획관리지역 1만m² 등)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됨.
- 다만, 추가되는 신규 업종의 허가면적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4 각호의 규모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1-4. 태양광발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문의

【질의내용】

-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27개 부지에 대해서 27개 발전소(각각의 부지에 대해 발전사업허가 예정)를 동일사업자 동시시행으로 계획 중에 있음.
- 계획된 27개소 부지가 행정구역상 5개 면에 산재되어 있고, 각 부지간 거리는 5~20km 이며, 각 부지당 면적은 1,000~20,000m² 으로 다양함.
 - 질의① 27개소 개별 부지 중 보전관리지역 5,000m² 미만지역 5개소, 생산관리지역 7,500m² 미만지역 4개소, 계획관리지역 10,000m² 미만지역 3개소, 농림지역 7500m² 미만지역 3개소가 있다면, 최소 대상면적 미만인 상기 15개소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 질의② 시행령 별표4 비고 9에 따라 본사업의 해당용도지역의 '사업계획면적/해당용도지역'의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합이 1이상 이므로 전체부지 면적(205,229m²)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지?
 - 질의③ 각 부지간 거리가 5~20km 인 27개소 부지를 동일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포함이 안될 시 동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 범위(부지간 거리등)는?

【답변내용】

- 질의 ①, ②, ③에 대하여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12에 따르면 '사업의 규모는 협의 요청시گران 중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27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해서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시행하면 될 것이므로 귀하께서 언급하신 내용과 같이 최소 대상면적 미만인 15개소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각각의 사업부지간 이격거리가 50m 이내일 경우에는 별표9에 의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됨.

1-5. 궤도(케이블카)설치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및 대상면적

【질의내용】

- 농림지역에 「궤도운송법」에 따른 총길이 2km미만인 궤도사업(삭도-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함.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2에는 「궤도운송법」에 관한 사항이 없음.
 - 질의①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보지 않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보는지
 - 질의② 궤도사업(삭도-케이블카)의 경우 사업규모가 연장(km)으로 환산이 되며, 공중에 설치하는 시설로 실제 사업부지면적은 구조물로 인해 점용되는 국소적인 면적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검토시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궤도사업(삭도-케이블카)의 경우 점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선하부지(공중에서 투영된)면적으로 하는지
 - 질의③ '질의②'의 면적 기준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이하일 경우 어떤 환경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 질의 ①, ②에 대하여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고,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이 있을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해당하게 됨.
 - 아울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는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의미함
- 질의③에 대하여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하일 경우에 대한 행정절차는 관련 인·허가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1-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유무

【질의내용】

- 질의① 2008년 창고부지 조성사업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 2011년 건축준공이 완료된 부지로 금회 2014년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 질의 ② 2011년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부지 조성사업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았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실시하지 못하다가 금회 2014년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답변내용】

- 질의①, ②에 대하여
 -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받고 인·허가된 창고가 공장으로 변경되면서 공장신설승인과정 등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새로운 법률적용으로 기 인·허가 사항이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이미 협의를 완료한 사전환경성검토(개발사업) 또한 해당사업 허가사항 실효와 함께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립하려는 공장의 규모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함.

1-7. 토석채취허가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질의내용】

- 토석채취구역 19,340㎡(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토석 채취를 위한 구역 밖 진입로 개설면적 1,239㎡(목적외 사용승인 461㎡, 하천 점용허가 109㎡, 진입도로로 농지의타용도 일시사용 669㎡) 으로 총 20,579㎡임.
- 공익용 외로 산지관리법 30,000㎡미만이나 「환경영향평가법」 별표4 비고8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일 경우에는 별표4 제4호 (「산지관리법」 적용지역)를 적용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1호를 적용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제8호는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적용함.
- 위와 같은 경우에는, 비고 9호에 따른 산식결과가 1 미만 ($19,340/30,000 + 1,239/7,500=0.81$)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1-8. 도시지역 및 해면부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질의내용】

- 도로건설 사업으로서 노선연장 841m이며 사업지구 편입면적 63,844m²이나 이중 자연녹지지역이 31,483m², 일반공업지역이 14,287m², 해면부 18,074m²(해면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별도 해역이용협의 대상),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그 대상인바,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아니며, 해면부의 용도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각 호의 사업계획면적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나,
 - 해면부의 용도지역이 구분(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1-9. 오래된 공장부지에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질의내용】

- 본 사업지구의 면적은 약 17,000m²으로 1981년 공장등록허가를 득하여 운영하던 곳으로 금번 당사가 인수하여 공장 업종 변경을 시행하고자 함.
- 사업부지 면적의 증감없이 현 부지를 그대로 이용하고자 하며, 다만 기존 건축시설(약 3,400m²)이 너무 노후되어 멸실시키고, 기존 건축시설 부지에 기존과 마찬가지로 약 3,400m²의 건축시설을 신축하여 건축시설 신축허가를 득하고자 함.
- 공장업종 변경 및 건축시설 신축허가(기존 건축시설 멸실)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 질의내용만으로는 기존 공장 사업부지(17,000m²)에 대한 사전 환경성검토(개발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여부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존 사업부지에대한 상기 협의를 하였다면 동 협의된 부지 내에서 건축물을 증·개축 및 신축하는 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 볼 수 없지만
- 동 협의를 미 이행한 경우라면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물 신축 등의 인·허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면적이 10,000m²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및 비고11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

1-10.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이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질의내용】

-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산지인 경우 45,000m²)이며, 지목상 임야에 해당되어 국토이용법에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임.
- 질의①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지관리법 적용지역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인지
- 질의②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할 경우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으로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8에 '같은 표 제4호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만을 받는 경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허가와 함께 다른 인·허가를 수반할 때에는 제1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1호에서 도시지역은 제외되므로 상기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1-11. 도시지역 하천구역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질의내용】

- 본 사업의 사업면적은 16,470.87㎡로 2개 필지이며, 1007-6번지 5,559.70㎡, 1007-8번지 10,911.17㎡임. 용도지역은 2개 필지 모두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이며, 다른 법령에 의거 1007-8번지 (10,911.17㎡)가 소하천구역임.
 - 따라서, 본 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에 의거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 사업면적 7,500㎡’로 시행하여야 되는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이들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고, 제1호와 각호(제2호 및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호를 적용하며, 각호 간에 중복될 경우에는 사업계획면적 규모가 적은 것을 적용해야 하는바,
 - 도시지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나, 같은 법 별표4 제7호에 규정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인 경우 사업계획면적이 7,500㎡ 이상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1007-8번지(10,911.17㎡)는 동 평가 대상에 해당됨.

1-12. 노천광물 채취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질의내용】

- 계획관리지역(준보전산지)에서 3만㎡의 면적에 노천광물을 채취하려고 함. 사실상 필요한 부분은 약 3,300㎡ 정도이나,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면적을 3만㎡이상의 면적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함. 광물채취 시 현재의 수목이나, 별도의 산림훼손 없이 표면에 있는 광물만 채취하려 하는데 신청하는 면적이 3만㎡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 노천광물을 채취하는데 있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및 비고8의 규정에 의거 계획관리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산지일시사용허가면적 기준) 이상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

1-13. 진출입 도로가 평가대상 사업부지에 포함될 경우

【질의내용】

- 계획관리지역내에 주택개발사업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 미만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하지만 본 사업지로 진·출입 하기 위해서는 법정도로에서 분기하여 진·출입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관청에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이 경우 주택사업지 면적과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합산하면 10,000m² 이상이 되는데, 이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각 호에 규정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이나 업종 등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해당사업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면적(진입도로 포함)이 계획관리지역에서 10,000m²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

1-14.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후 별도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질의내용】

- 골프장 사업부지 하류부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 시 「소하천정비법」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시행)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2004년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해당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시행계획수립은 하지 않은 상태임.
- 총 연장 3.6km 중 약 1.2km 정비할 계획(면적 1만㎡ 이상임, 농림 지역)이며, 약 200m 구간 소하천 선형이 미미하게 변경됨
- 이 경우 「소하천정비법」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시행)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소하천이 소하천정비종합정비계획 수립 이후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법 제10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 소하천정비와 관련하여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종합정비 계획, 하천정비시행계획, 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공사시행 등의 업무처리절차, 시행계획의 생략가능 여부 등은 「소하천정비법」 운영·관리부처 소관으로 사료되며,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2.개발 기본계획 자목 2)'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지 「환경영향평가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세부평가항목을 검토한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동 검토항목을 생략할 수 있음.

1-15. 산지전용허가 기간연장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질의내용】

- 본 사업은 임야(공익용외 산지) 15,284㎡에 광산개발사업임.
 - 2001년 : 채광계획인가 득함
 - 2007년 : 산지전용허가를 득함
 - 개발을 하려고 했으나 여건상 하지 못하여 중단하였으며, 금번에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부분이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산지사용에 대한 기간연장허가를 하려고 하는데, 본 사업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전면개정·시행(2012.7.22)일 이전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현행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협의(보전이 필요한지역 내의 개발사업)를 하였으며, 질의한 사업의 산지전용 허가시점인 2007년 이전부터 산지관리법 적용지역은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토석채취허가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적용 이외 각호를 적용(현행, 별표4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해야 하는바, 2007년 당시에 산지전용 허가전에 당해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개발사업) 협의를 하여야 할 사항이며,
 - 2007년 당해사업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시 사전환경성검토(개발사업)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금회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포함) 기간연장 허가 시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이행해야 함.

1-16. 개발행위 없는 인허가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

【질의내용】

- 바다낚시터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지 전체 면적은 35,244㎡이며 이 중 수면 면적 19,880㎡을 제외한 부지면적 15,364㎡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면적이 10,000㎡ 이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성 평가 대상이라고 ○○시 ○○과에서 보완사항으로 등제되었으나, 본 사업지의 수면면적을 제외한 부지 면적은 별도의 인허가(개발행위허가)가 진행되지 않으며, 바다낚시터업을 시행함에 있어 점용면적임. 부지면적 15,364㎡에는 절성토 행위 및 일체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며 현상태 그대로 사용하는 면적임.
- 바다낚시터업의 법령제정 전부터 유료 바다낚시터를 운영하다가 바다낚시터업이 신설되면서 신규로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이어 진행하려는 목적으로 절성토 행위 및 일체 공사행위가 진행되지 않는에도 소규모환경영향성평가를 받아야하는지

【답변내용】

- 전체 사업면적(35,244㎡)에 대하여 개발행위가 전혀없는 단순한 행정절차(낚시터업 허가)만 이행하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에서 규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1-17. 상수도 관로매설공사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질의내용】

- 고흥군 8개읍면 27개마을에 상수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총 관로 연장이 마을 내부 관로 포함해서 55.7km 이며, 굴착폭을 1m로 하여 계산하면 55,700m² 정도인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답변내용】

- 상수도 관로연결을 위한 지하매설공사 등이 개발행위 허가 등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을 수반하며, 해당사업의 규모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각 호에 규정한 면적 이상일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임.

1-18. 토지이용계획 변경시 재협의, 변경협의 여부

【질의내용】

- 본 사업장은 2009년 1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조성사업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득하였으며, 당시 토지이용계획 중 경관녹지(원형보전녹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금번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당초 경관녹지(원형보전녹지)로 협의 득했던 부지 일부를 부득이하게 훼손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부지 전체면적의 증감은 없으며 경관녹지(원형녹지) 일부만을 훼손하게 될 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협의나 변경협의를 득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에서 규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변경협의, 재협의 규정이 없는바,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또는 재협의·변경협의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승인기관에서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변경허가 여부, 새로운 허가조건 부여 등으로 조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1-19. 전략환경영향평가지 이미 검토한 항목은 중복하여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내용】

-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하천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후 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시행되는 하천공사)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지방하천공사로서, 면적이 10,000m² 이상이면서 하천 중심길이가 10km 미만인 하천공사를 시행 시 과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7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별표2의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따른 행정계획 단계에서 이미 그 검토항목에 대한 검토를 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과 같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중복하여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서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미 별표1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검토한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지 미리 검토한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같은 평가항목의 중복검토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바,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일부를 검토하였다면 그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에서 검토하여야 하며,
- 전략환경영향평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세부평가항목 전체를 검토하였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에서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 없으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생략하는 것임.

1-20. 사업부지의 증가 없이 생산설비만을 증설하는 경우

【질의내용】

- 본 사업장은 2009년 10월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득한 공장으로서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콘크리트암거를 생산하는 공장임. 부지면적은 15,421㎡이며, 생산시설 중 소음배출시설에 해당이 되어 소음배출인허가를 득한 후 현재 운영중임.
- 기존에 암거의 원료가 되는 레미콘을 외부에서 조달해왔으나 금번에 기존 공장부지내에 레미콘생산설비를 갖추어 자체 조달하고자 하며, 레미콘 생산시설 추가시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이 부지면적의 변경 없이 기존 운영중인 공장내에 신규 생산설비(대기오염 및 수질오염배출시설 해당)를 추가할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 당초 적법한 인·허가 등을 득하여 운영중인 공장의 사업부지(면적)의 증가 없이 공장내 생산설비만을 추가(대기·수질오염배출시설)할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각호에서 규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1-21. 도로 노선만 일부 변경하는 경우 소규모 평가 범위

【질의내용】

- 00군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02월 △△~□□간 간선도로 사전환경성검토를 00청과 협의 완료한 후 사업 추진 중 공사비의 부족으로 일부구간(터널구간)에 대해 현재의 임도를 활용한 노선으로 변경하려 함
- 이에 금회 시행하는 △△~□□간 간선도로 연결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기존협의노선을 포함한 전체노선에 대해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 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행정계획) 협의한 내용의 변경사항(도로노선 변경)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규정한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우선 검토 하여야 하며, 변경경협의 대상이 된다면 변경협의한 도로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함.
- 또한, 변경협의 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협의기관과 변경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22. 하천점용허가(행정절차만)만 하는 경우

【질의내용】

-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도로개설이 완료된 구간으로 기존 개설된 도로 그대로 단순 점유를 목적으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댐 저수구역 관리청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득하고자 함. 이와 같이 시행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아닌 단순 하천점용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답변내용】

- 개발행위가 없는 단순 행정절차(하천점용 허가)만 이행하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에서 규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1-23. 사업부지 합병 후 증설하는 경우

【질의내용】

- 본 사업은 2009.12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득하였고 금번 사업자 변경, 부지면적 증가, 용도 변경하여 허가기관에 민원을 접수한 결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득하라는 보완이 나왔음. 본인의 판단은 2012.07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내용변경 해당법령은 삭제됨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판단되나 아래와 같은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 《당초》사업자 : A식품(이00), 사업면적 : 6,461m² , 사업부지 지목 : 전, 답, 사업내용 : 코코아제품 및 과자제조업, 아이스크림 및 기타식용빙과류제조업 , 협의유무 : 2009.12 한강유역환경청 사전환경성검토서 협의 득함
 - 《변경》사업자 : 주식회사 B푸드(박00), 사업면적 : 9,478m², 사업부지 지목 : 전, 답, 사업내용 :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답변내용】

-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개발사업) 협의 후 다른 사업자가 동 검토 사업부지를 인수하여 사업부지를 증설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금회 추가 증설하는 부지 면적이 3,017m²이면서 전체 사업부지가 국제법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라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및 비고 11호 규정에 의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됨.

1-2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추가 증설의 경우

【질의내용】

- 아래와 같이 11년 1월 25,000㎡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후 11년 3월 15,000㎡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던 중에 12년 10월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면적 중 허가를 받지 않은 면적 10,000㎡에 대하여 추가로 개발행위 허가를 실시하려고 하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지역임에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지
 - 11년 1월 25,000㎡에 대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
 - 11년 3월 15,000㎡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함
 - 12년 10월 10,000㎡에 대하여 추가 개발행위허가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

【답변내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미 진행된 사업부지(25,000㎡) 내에서 1차로 15,000㎡개발, 2차로 10,000㎡를 개발하는 경우라면 당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부지내에서의 개발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1-25. 사전환경성검토를 완료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질의내용】

- 하천법에 의거하여 하천공사 실시설계를 수립중(사업계획 면적 350,000m² 이상)인 하천임.
-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사전환경성검토(2011년 완료)가 기 수행된 하천으로 현재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단계(개발단계)인데 별도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시행(2012.7.22)전 구법에 따라 진행하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는 개정·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부칙 제4조 규정에 의거 해당절차만 구법에 따를 수 있으며, 2012.7.22 이후부터는 신법규정이 적용되는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m² 이상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
- 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행정계획)를 한 경우, 같은법 제3조제7호를 근거로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사업은 동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개발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으나,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한 「환경영향평가법」에는 동 내용을 삭제하였는바, 상기와 같은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됨.

1-26. 단순 지목변경만 할 경우

【질의내용】

- 지목상 농지에서 임야로 단순지목변경을 위한 허가 임. 지목상 농지이지만 사실상 임야이며(35년~50년이상 수령 소나무로 산재), 현실에 맞게 사실상 지목으로 변경(정정) 하였음.
- 이러한 경우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순한 지목변경(행정절차만 이행)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1-27. 평가대상 미만으로 승인 후 추가 증설이 있는 경우

【질의내용】

- 계획관리지역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미만인 9900m² 부지를 공장신설승인을 득하여 부지를 조성하였음. 금번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미만으로(약 2900m²) 공장 부지증설 승인을 득하고자 함. 부지를 증설함에 있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 되는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11에는 이미 허가를 받은 면적과 추가로 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여러 번의 변경으로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바, 위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할 때를 의미하므로 상기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에서 금회 추가하는 면적이 30%(3,000m²) 미만이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1-28.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공장의 경우

【질의내용】

- 2009년에 설립하여 운영하던 공장을 건물과 토지를 경매로 인수하여 기존 건물 그대로 사용하려 하는데, 주인이 바뀌었다고 소규모 환경평가를 또 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개발행위 없이 명의변경만 하여 낙찰받은 그대로 사용한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 다만, 명의변경 외에 공장등록을 위한 새로운 인·허가 절차가 수반된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라 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에 협의절차를 거쳐야 함.

1-29. 사업부지 증설 및 개발행위 없이 제조시설 면적만 증가할 경우

【질의내용】

- 당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로써, 기존성된 공장부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행위같은 개발행위 등의 수반이 전혀 없이 기존 등록되어 있던 공장이 제조시설면적 증가(오염량 증가) 등의 사유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설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면 이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 ※ 계획관리지역이며 당초 A사업자에 의해 8500제곱미터가 개발되고, B사업자에 의해 2500제곱미터가 개발된 부지로써 C사업자가 합산 부지면적(11,000제곱미터), 전체 건물연면적(8,046제곱미터) 중(2,400제곱미터)를 임대 사용하려는 사안임.

【답변내용】

- 기 허가(승인 등)된 사업부지 내에서 사업면적(사업부지)의 증가없이 단순히 제조시설의 규모만 증가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님

1-30.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관련

【질의내용】

- 2004년도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시 사전환경성검토를 수행하고, 2012년 6월에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 같은해 7월 23일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 같은해 12월28일 주민의견수렴(용역수행 사항으로서 환경관련 내용포함)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질의① 법령 개정이전 발주된 사업의 경우 법령개정이전 협의 절차를 준용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협의를 진행하여도 되는지?
 - 질의② 본 용역(실시설계)에 대한 평가서 작성시 상기 추진경위와 같이 주민의견수렴 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상위 및 관련계획검토, 대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할 경우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에 대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로 같음하여도 되는지?
 - 질의③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하지 않고 사업시행자 및 승인기관 등이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시행계획 미 수립에 따라 해당 협의기관(유역청)이 협의요청에 대한 반려 사유(관련 행정절차상의 미 진행)가 되는지?
 - 질의④ 만약, 실시설계에 따른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면, 주민의견수렴(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 등)은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민설명회 절차는 상기 추진경위와 같이 진행함에 따라 같음하고 공람·공고만 진행하여도 되는지?
 - 질의⑤ 또한,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소하천구역 7,500㎡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 질의 ①에 대한 답변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시행(2012.7.22)전 구법에 따라 진행 하던 사항은 같은법 부칙 제4조 규정에 의거 해당절차만 구법에 따를 수 있는바, 용역계약체결 일자(12.7.22,)부터 신법 규정에 따라야 함.
- 질의②~⑤에 대하여
 -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법령으로 구분되어 있는바(별표2, 별표4),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갈음할 수 없으며,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세부항목을 검토한 경우 해당항목을 생략할 수 있음 (이 경우 협의근거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세부검토항목 중 해당항목을 명확히 표명하여야 함)
 - 하천의 이용 및 개발의 경우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고, 같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하천 구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각각 별개의 협의대상이며, 협의 순서는 관련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협의 순서가 바뀌었다면 협의기관에서 반려할 수도 있음.
 -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할 경우 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의 생략여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의거 다른법령의 의견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는 같은법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1-31. 업종 변경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질의내용】

-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로서 기존 폐기물 중간처리업 면적(골재야적장포함)이 14,427m² 에 작년2012년 9월경에 공장부지 확장으로 인해 골재 야적장 포함 총11,639m²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위 신청 면적중 6,378m²을 폐기물 재활용 업체로 전환(벽돌.제조공장)코저 할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부지에서 사업부지 면적의 증가 없이 기존 부지중 일부 부지에 대한 사업 업종만 변경되었다면 이는 별도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판단시 연접규정

2-1. 같은 사업자 판단 주체

【질의내용】

- 같은 사업자 여부를 인허가기관에서 검토하는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인허가부서의 협의가 없이 일방적 업무이관 또는 회피라고 사료되는바,
 - 질의① 왜 인허가부서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
 - 질의② 인허가부서라 함은 민원접수부서인지 아니면 관련문제 검토협의 기관인지
 - 질의③ 인허가 신청시에는 민원인의 가족관계 및 직원여부 등의 서류를 첨부하라는 규정이 없어 관계서류요구 시 불필요 서류 요구에 따른 민원발생요지가 다분하다고 사료됨. 이에 대하여도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는지
 - 질의④ 같은사업자의 판단은 인허가시에만 하는것인지 아니면 공사완료시까지 적용되는 것인지? 만약 인허가 이후 같은사업자로 판단될 경우의 후속조치(방법) 및 처리주관부서가 어디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 질의 ①, ②에 대하여
 - 민원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해 승인기관에 인가·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하면 인·허가부서에서는 행위의 종류, 대상부지의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관련되는 법령, 신고 또는 허가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 민원인이 신청한 내용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 등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행정처리 절차일 것임.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절차 중의 하나로서 위와 같은 행정처리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인지도 확인해야 하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 또한, '같은 사업자' 여부는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개발사업자(시공사), 개발시기, 친·인척 관계여부 등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법체계상 각각의 사례별로 법에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부서에서 개발·운영·관리 등의 연관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질의 ③에 대하여

- 신청건마다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같은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를 분할하는 등 법을 악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의 예시를 들어준 것임.
- 또한, 법의 악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불필요한 서류요구'로 볼 수 없을 것임.

○ 질의 ④에 대하여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11에 따른 같은 사업자에 해당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되며
- 후속조치의 주체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위반사항을 인지한 사람(기관)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수 있음.

2-2. 주택 옆 농지개간의 경우

【질의내용】

- 계획관리지역에 편입면적이 985㎡인 주택을 신축 허가를 신청하고,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9,455㎡인 농지개간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경우 두 사업의 면적을 합산한 편입면적인 10,440㎡으로 보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목적이 다르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각 호에 규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사업의 목적·내용 등을 구분하지 않음.
 -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에서 당초 985㎡에 연접하여 9,455㎡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그 합이 10,440㎡로써 같은표 비고 제11호 규정에 의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

2-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지 연접적용 여부

【질의내용】

- 농림지역에 본인과 본인의 동일 업종을 운영하는 지인과 본인의 토지 14,900㎡의 각각 7,450㎡씩 공장을 신축하고자 함. 그러나 토지소유권이 같고 토지사용승락에 의해 동일 목적사업을 시행한다하여 본 사업을 동일인의 목적사업으로 판단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본다고 함.
- 본인들은 전혀 관계없는 남남으로서 각자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람으로서 각기의 사업 시행하는 주체 운영자가 다른데도 토지의 사용승락을 받아 사업을 시행함에 같은 목적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같은사업자로 보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11에 따라 같은 사업자일 경우에만 연접한 사업면적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류상 사업자를 분리한 경우라도 해당사업의 개발·운영·관리 등의 연관되는 사업계획은 같은 사업자로 봄이 타당 할 것임.
- 일부 사업자의 경우 사실상 같은 사업자이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만 분할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알려드리며,
 - 이 경우 같은 사업자 해당여부의 최종판단은 당해 사업의 승인(인·허가)기관에서 개발사업자(시공사), 개발시기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판단하여야 함.

2-4. 허가를 득한 후 합병할 경우 면적합산 여부

【질의내용】

- A, B 둘 다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A의 허가를 B로 변경허가를 신청함. 허가를 받았지만 공사는 시작을 안했음. 변경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최초 허가 신청시 B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차명(A)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B는 변경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운영을 같이 할 계획임. 실질적인 운영을 같이 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 제11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을 합산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는 것인지

【답변내용】

-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업의 추진경위, 정확한 인·허가 사항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하여 A와 B로 명의를 분할하였다가 허가를 득한 후 합병하는 변경허가를 할 경우 같은사업자의 동일사업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계획 면적 이상일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사료되며,
 - 이 경우 같은사업자에 해당 여부는 해당사업 인·허가 기관에서 조사 분석하여 판단함이 바람직함.

2-5. 공장설립 및 사도개발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여부

【질의내용】

- 농림지역 임야에서 사도개설신청면적 6,300㎡, 공장설립신청면적 7,400㎡인 경우,
 - 사도로 이용되는 부분은 공장의 진출입만 이용되는것이 아니고, 주택의 진·출입으로와 잔여 임야의 추후 개발을 위하여 사용될 것임. 사도법에 의하여 개설되는 사도 신청면적도 공장설립 신청면적과 연접규정이 적용되는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의 연접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구분이 없으며, 공장설립신청면적과 사도개설 면적의 합이 농림지역에서 7,500㎡ 이상일 경우 같은 표 제1호에 의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

2-6. 농경지 육상골재 완전복구 후 연접규정 적용

【질의내용】

- 2013년도 3월 27일에 농경지(농림지역)에 6,993.6㎡의 면적으로 육상골재채취사업의 허가를 득하여 2013년도 9월에 농경지로 원상복구하여 채취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금회 원상복구 부지와 50m이내에 동일사업자가 농림지역에 7,386.8㎡의 면적으로 추가로 육상골재채취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 농경지에 육상골재채취사업 허가를 득한후 골재채취를 완료하고 동 사업지를 본래의 농경지로 원상복구 완료하였다면 이는 해당 행정행위(허가)는 종결되고, 사업지는 본래(자연)상태로 회귀한 것으로 보이는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11의 연접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2-7. 목적이 다른 사업의 연접규정 적용

【질의내용】

- 계획관리지역내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운영 중인 건설 폐기물처리회사가 존재하고 있는 지역과 연접한 생산관리지역에 7500㎡가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접지 회사의 목적과는 상관 없는 단순 토석채취허가를 득하려고 할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답변내용】

- 기 허가 받아 운영중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 진행과정, 규모 등을 제시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11의 연접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이나, 업종을 구분하지는 않으므로 동 표의 비고11에 적용가능 여부 및 비고9의 용도지역별 산출식에 따라 그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8. 무허가 건물 인근 개발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범위

【질의내용】

- 본 사업은 60~70년대 무허가 건물로 지어진 군사지역(군 진지 및 막사 등)으로 군 진지 및 막사 등을 정비하려고 함. 본 지역은 대부분이 군사시설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이며 일부 신규로 편입되는 면적이 있음
 - 상기와 같은 계획으로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으면서 환경영향평가법 개발제한구역 5,000m² 이상에 해당되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었음
 - 인허가시 기 훼손된 지역은 제외하고 신규로 편입되는 면적만 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제한구역 5000m² 이하로 되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제외해도 되는 건지, 또는 기 훼손된 지역까지 포함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참고로 환경관련법이 생기기 이전에 만들어진 무허가 건물 및 토지들이며, 토지 소유자는 국방부임

【답변내용】

- 무허가 건물 등 기 훼손지와 동일인이 이와 연접한 부지에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무허가 건물 및 기 훼손지를 적법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금회 사업규모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사업 인·허가 기관에서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는 해당사업 개발행위 인·허가 시 사업규모를 의미하는바, 해당 개발행위 허가 시 사업면적이 동법 시행령 별표4 각호에서 규정한 면적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동 면적 미만일 경우에는 비대상임.

2-9. 연접 사업장 인수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질의내용】

- 아스콘 공장에서 도로(지방도) 건너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를 업종변경 없이 인수하고자 함. 개별사업장인 경우에는 면적이 검토대상기준에 미달되어 환경성검토대상에 속하지 않으나, 인수 후 합산하면 면적이 검토대상에 해당됨. 이러한 경우 합병을 위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만약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라면 검토단계에서 합병이 불가능하다면 인수가 불가능한지? 개인적인 생각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이라 사전환경성 검토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답변내용】

- 질의요지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개발행위가 없는 단순한 행정절차만 이행(인수·합병 등)하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에서 규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 아울러 기존 사업장과 인수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50m이하에 위치하며, 개발행위가 있는 인·허가를 수반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9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음.

2-10. 제척부지를 다시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질의내용】

- 본 골프장은 1975년부터 운영중인 골프장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이전 사업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없었으며, 2010년 사전환경성검토(행정계획)을 시행하였음. 2010년 사전환경성검토 시 편입지역 중 일부지역(8,603㎡)은 골프장 입지가 불가하여 승인시 제척하였다가 금회 골프장 입지가 가능하여 다시 편입하고자 함. 금회 다시 편입하고자 하는 8,603㎡ 지역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행정계획) 협의시 제척하였다가 금회 추가하는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금회 편입부지는 파편화되어 분산되어 있으나 모두 기존 사업부지와 연결하고 있는바, 직선거리 50m 이격여부의 적용 대상이 아님

2-11. 동일사업자가 연접하여 다른 사업을 할 경우

【질의내용】

- 질의① 동일사업자가 다른사업을 진행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는지(예, 기허가지 : 공장, 금회신청지 : 단독주택 단지)
- 질의② 동일사업자가 기 허가받은 사업장에 연접해서 다른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을 진행시 신규사업(금회 신청사업) 또는 연접적용(기허가+금회신청) 중 어느 것에 해당 되는지
- 질의③ 동일사업자가 공장조성사업의 허가전(협의 진행중)인 사업장과 연접해서 새로이 단독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진행시 연접 적용하여야 하는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11에서는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 바, 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 등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연접규정이 적용됨.
 - 기 허가 받은 지역에 대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였다면 기 허가지역은 제외하고, 동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의 비고 11에 따라 기 허가 지역과 추가로 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규모 이상이고, 금회 추가하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 이상이면 대상임.

2-12. 진입도로는 공동명의로 허가 신청시

【질의내용】

- 계획관리지역으로 1필지의 면적이 31,030㎡이고 토지주는 36명임. 토지주 36명이 각자 자기의 지분 700㎡로 각각 개별건으로 단독 주택 신축을 위하여 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를 36건을 신청하고 진입도로 5,830㎡는 36명이 공동명의로 1건으로 개발 및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인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11의 ‘같은 사업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은 없으며, 사실상 같은 사업자이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만 분할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같은 사업자 해당여부의 최종판단은 당해 사업의 승인(인·허가) 기관에서 개발사업자(시공사), 개발시기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판단하여야 함.
-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1필지의 토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진입도로를 신청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것으로 계획하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같은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13. 같은 사업자의 연접규정 적용

【질의내용】

- A명지의 개발행위허가 4,454m², B명지의 개발행위허가 4,453m²가 있음. 두 지역은 연접이고 보전관리지역임.
 - A의 개발행위허가를 B로 변경허가 신청을 함. 공사는 미착공 상태이고 두 지역 모두 건축신고를 할 예정으로 연접 적용을 하여 8,907m², 보전관리지역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
- 질의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는 '허가 전'인데 '변경허가'도 '허가'로 보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 할 수 있는지
- 질의② 미착공 상태여서 실질적인 운영을 같이 하는 것이라 간주하고 연접을 적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 질의③ 변경허가는 허가로 볼 수 없고, 이미 최초 허가가 났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지

【답변내용】

- 질의①, ③에 대하여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11에서 같은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으로 허가를 받은 후 연접하여 사업부지를 추가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을 경우, 동 변경허가 신청시 사업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하는 면적이 최소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누적포함)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임.
- 질의②에 대하여
 - 같은 사업자인지 판단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하여 명의를 분할한 것인지 등은 당해 사업 인·허가기관에서 조사·분석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함.

2-14. 같은 사업자인지 여부

【질의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11에 ‘같은 사업자’의 범위
 - 첫째, 두건의 허가신청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같은 사업자로 적용되는 것인지,
 - 둘째, 두 허가신청인의 관계를 따져서 어느정도의 관계(가족, 소속 기관 등)일 경우 같은 사업자로 적용하는 것인지,
 - 셋째, 법인명의로 공장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사업장의 인접한 부지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소매점 허가를 신청하였을 때에도 같은 사업자로 판단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 넷째, 법인과 대표이사가 같은 사업자로 인정된다면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의 다른 직원들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11에서 규정한 ‘같은 사업자’란 사실상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하며, 서류상 사업 시행자를 분리하여도 개발·운영·관리 등이 연관되는 사업 계획은 같은 사업자라고 할 수 있음.
 - 일부 사업자의 경우 사실상 같은 사업자이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만 분할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같은 사업자 여부는 당해 사업의 승인(인·허가)기관에서 조사·분석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두건의 허가신청인이 동일한 경우, 가족 또는 같은 소속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으로 허가신청한 경우, 법인의 임·직원 등은 위와 같은 사유로 같은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됨.

2-15. 개인과 법인으로 인허가할 경우 연접규정 적용

【질의내용】

- 2002년도에 축사에서 종교시설 (교회)부지로 본인(개인)명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고(허가면적 : 4,000m²), 금번에 법인명의 (대표:본인)로 교육연구시설을 위 교회부지와 인접하여 약 9,000m² 정도 개발하려고 할 경우,
 - 추가(신규)로 신청하는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면적 미만인면서 사업주체도 개인, 법인 각각 다른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11에서 정한 같은 사업자란 사실상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 다만, 서류상 사업시행자를 분리하여도 개발·운영·관리 등이 연관되는 사업계획은 같은 사업자라고 할 수 있음.
 - A라는 사람 명의로 개발사업 부지와 연접하여 A라는 사람이 법인을 만들어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같은 사업자로 보아 연접규정을 적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일부 사업자의 경우 사실상 같은 사업자이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만 분할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같은 사업자 여부는 당해 사업의 승인(인·허가)기관에서 조사·분석하여 판단하여야 함.

2-16. 태양광사업자 분할시 연접규정 적용여부

【질의내용】

- 임야(보전지역) 18,000㎡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다섯사람이 4,500㎡씩 나누어 하려고 함. 각각 다른 사람이라 연접규정을 안받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 설계 및 공사, 태양광설치를 5사람이 일괄처리하여 한번에 이루어질 때에도 연접규정을 안 받는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11에서 정한 같은 사업자라 함은 사실상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하며, 서류상 사업시행자를 분리하여도 개발·운영·관리 등이 연관되는 사업계획은 같은사업자라고 할 수 있음.
- 일부 사업자의 경우 사실상 같은 사업자이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만 분할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 11호에서 정한 같은 사업자에 해당여부는 당해 사업의 승인(인·허가)기관에서 조사·분석하여 같은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17. 2건의 개발행위허가를 통합하여 평가가 가능한지

【질의내용】

- 전답 26,855㎡에 버섯재배사를 조성하고자 하나 사업예정지가 구거로 양단되어 있어 2건의 개발행위서류가 접수됨. 이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각각 작성하는 것보다 동일사업자로 동일 사업계획으로, 지형이 연결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작성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발행위 건수는 관계없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각 호 및 비고11에 해당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인 바, 2개의 개발행위가 연결하여 있고, 동일사업자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할 수 있음.

3. 기 타

3-1. 가축분뇨 발생시설의 범위

【질의내용】

- 질의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결정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7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과 처리시설, 가축사육부지'시설과 부지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 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물 용도는 축사이지만 착유실과 분리되어 가축분뇨가 발생하지 않는 시설 즉, 기계실, 컴퓨터실, 관리실, 저장고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5,000㎡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 질의② 별표 4 비고 7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일 이전의 기존 축사도 신축축사와 함께 평가대상면적으로 계산하는지? 기존 운동장에 지은 신축축사는 평가대상면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답변내용】

- 질의 ①에 대하여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7의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과 가축사육 부지면적의 합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시설면적의 합계를 의미함.
 - * 제3호(배출시설) :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및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 * 제8호(처리시설) :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 중 분뇨를 배출하지 않는 기계실은 시설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그 외의 운동장, 착유실 등은 시설면적에 포함됨.
- 질의 ②에 대하여
 - 유선으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법 시행 후(2012.7.2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과 가축사육 부지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며, 최초 인·허가를 수반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해당됨.

3-2. 기 준공된 송전선 유지보수의 경우

【질의내용】

○ 사업개요

-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발전소 발전용량 증대에 따라 송전 수송 용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1994년 준공된 345kV 송전선로 전선을 교체하는 사업

○ 사업내용

- 발전소 부지내(동일필지) 일부 철탑 신설 및 철거
*사업계획면적 : 계획관리지역내 8,300m²
- 변전소 부지내(동일필지) 일부 철탑 신설 및 철거
*사업계획면적 :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발전지역내 3,800m²
- 기존전선을 교체하기 위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 설치
*사업계획면적 : 8,500m²

○ 질의내용

- 질의① 신설 송전선로 사업이 아닌 동일 선로 및 필지안에서 시행하는 기 준공된 송전선로 유지 보수 하는 사업 시행을 위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작업장, 가선장, 엔진장, 드럼장 등)에 대한 인·허가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9조에 의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 질의② 또한 위 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이 될 경우 관계기관 과 협의중 당초 계획했던 진입도로 노선이 변경되어 면적이 증감할 경우 관계법상 재협의 사항이 없으므로, 어떤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 질의①에 대하여
 - 사업의 추진경위, 환경영향평가 협의여부, 용도지역 등이 제시되지 않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 도시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4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 바람.
 - 아울러, 본 사업이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은 사업장일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변경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질의 ②에 대하여
 -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재협의 변경협의 규정이 없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사업시행 과정에서 도로노선 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계획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각호에 규정한 규모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증가한 부지에 대하여 별도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함.

3-3. 개발행위 없는 무허가 건물의 허가시

【질의내용】

- 본인은 부지면적 7,435㎡에 건축면적 1,995.82㎡를 2002년 12월에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득하여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축산폐수 재활용)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후 공장등록,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였으며 무허건물이 793.14㎡가 있음.
- 금회에 부지면적(7,435㎡) 편입이 없어 개발행위 없이 무허건물 793.14㎡(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를 추인(등록)하려 합니다. 부지 편입 및 건축공사 없이 무허건물 추인(등록)만 하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 본 공장은 계획관리지역으로 10,000㎡미만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나 축산분뇨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공장 5,000㎡이상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임.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해당 사업 인·허가 절차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그동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없었고 이번에 인허가 절차가 진행된다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허가시 별도의 개발행위가 없더라도 당해 사업의 부지면적(사업계획면적)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각호 또는 비고에 해당된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함.

3-4. 전기사업 허가신청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

【질의내용】

-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거 전기사업허가 신청시 신청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는데 이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시기(협의시기)는 상기 전기사업허가신청시 인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청(산지전용)시인지?

【답변내용】

-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는 먼저 하는 허가시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행되는 허가 시 사업의내용, 설계, 토지이용계획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알 수 있는 후 허가(개발행위 허가)시에 동 협의를 하여도 무방함.

3-5. 공원조성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

【질의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른 공원 조성계획결정시 산지전용면적이 30,000㎡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시기에 대한 질의임.
- 공원조성계획결정 전에 협의요청 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성 계획결정 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전에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제4호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 허가만을 받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공원조성사업이 이에 해당된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는 해당사업의 인·허가 전, 즉 실시계획인가 전에 하여야 함.

3-6. 기존 측사에 일부면적 증가와 퇴비사 증설의 경우

【질의내용】

- 기존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대지면적 4,525㎡가 있고 지목이 목장용지이며 젓소를 사육하고 있음. 그런데 이번에 퇴비사증설로 인해 843㎡의 지목이 전(田)인 부지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5,368㎡로 증설이 되었음. 이로인해 시에서 민원처리실무 종합심의결과 동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검토내용이 나왔음. 신축건물이 아닌 일부 부지면적 증설과 가축사육처리시설인 퇴비사증설로 인해 소규모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7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법 시행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과 가축사육 부지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며, 최초 인·허가를 수반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임.

3-7. 축사 증설시 30% 적용규모는

【질의내용】

- 계획관리지역 777㎡와 농림지역 5,823㎡를 포함한 6,600㎡를 2010년도에 축사 신축부지로 허가를 받은후 공사를 진행중 필요에 의해 농림지역 2,200㎡를 추가로 개발(건축물이 없는 목초재배지) 하고자 할 경우 기 허가부지와 금회 신청계획인 부지를 합하면 8,800㎡가 되는데 이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 11항목에 추가개발 30%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법 개정전 개발면적을 적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시점으로 현재법(축사부지 5,000㎡)에 적용을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 축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7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사업계획면적의 합이 5,000㎡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같은 표 비고11의 추가면적 30%는 축사의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인 5,000㎡의 30%(1,500㎡)를 의미함.
 - 그러나, 축사의 경우 2012.7.22 전면 개정·시행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2호 규정에 의거 축사는 이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등을 신청하는 계획 또는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하는 면적(변경허가 신청면적)이 5000㎡ 미만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3-8. 개발행위 허가취소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유효성

【질의내용】

- 최초 공장조성사업을 위해 2008년12월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후 개발행위 최종허가를 득하였으나 허가를 자진취하하고, 업종과 시행사가 변경되어 공장조성사업을 위해 개발행위를 재신청하게 되었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재시행 해야 하는지
 - 기존 허가면적은 계획관리지역 21,921㎡이고, 취하 후 재신청면적은 20,698㎡이며 임야부 면적은 줄고, 농지부 면적 2,274㎡를 추가편입함

【답변내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해당 사업 인·허가 절차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당초 공장조성사업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개발사업)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동 사업 허가과정 또는 허가완료 후에 취소(반려 포함) 등으로 허가사항이 실효되었다면 해당사업은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이미 협의 완료한 사전환경성검토(개발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또한 해당사업 허가사항 실효와 함께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동일부지에 같은 내용의 사업허가를 다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인·허가 절차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한 재이행 하여야 함.

3-9. 이미 허가를 받은지역의 기간적 범위

【질의내용】

- 본인은 계획관리지역의 토지를 약 13,000m²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기존개발지(10년 이상)가 면적이 7,200 m² 이고 기존개발지(10년 미만)가 면적이 3,700 m²이고 금번 추가부지 농지 및 임야의 개발면적은 2,100m² 임.
- 질의① 본인은 금번 추가 개발하는 농지 및 임야의 면적 2,100m²과 기존개발지(10년 이상)가 면적이 2,100m²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여 기존개발지의 건축물 철거 등을 통하여 새로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 질의② 본인은 추가적인 개발면적이 2,100m² 밖에 되지 않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이 되는지를 검토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연속적인 사업이라고 해도 10년 이상이 된 토지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10년 미만을 합친다고 해도 면적이 5,800m²이며, 금번 사업에 포함된 10년 전의 토지 2,100 m²을 포함을 한다고 해도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검토가 필요한지

【답변내용】

- 2000년 8월 17일부터 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사전환경성 검토(개발사업) 협의제도가 도입·시행되었으며, 당시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조(개발사업의 사전협의를 관한 적용례)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사전협의를 관하여는 이영 시행후 최초로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동 제도 시행 이전의 허가받은 사업면적은 현행법 시행령 제59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별표4, 비고 11호에서 규정한 이미 허가를 받은면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따라서, 동 제도 시행일 이후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개발사업) 협의를 하지않고 허가를 받은 사업계획면적의 합이 계획관리지역에서 10,000 m²이상이 되고, 누적하여 추가로 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이 3,000m² 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

3-10.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허가의 취소

【질의내용】

- 골재 채취법에 따른 육상골재 채취사업으로 골재채취 허가 신청과 함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관계기관에 접수하여 진행하던 중 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청에서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골재허가신청에 문제가 생겨 취하를 한 후, 며칠 후 다시 사업주, 장소, 규모, 방법 모든 것이 똑같은 내용으로 골재 채취허가를 신청하는데 협의 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관계 허가진행상 절차사항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협의가 되어도 같은 사업이 허가를 다시 받을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해당 사업 인·허가 절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당초 골재채취업 허가과정중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 하였으나 동 허가사항이 취소되었다면 해당사업은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이미 완료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또한 허가 취소와 함께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동일부지에 같은 내용의 사업허가를 재신청할 경우 동 사업 인·허가 절차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또한 재이행 하여야 함.
 - 이 경우 기존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자료 등은 활용할 수 있을 것임.

3-11. 사전검토(개발사업)제도 이전 허가사항의 사업면적 포함여부

【질의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 비고 11호와 관련하여
 - 1차 사업부지(1992년9월23일 건축허가 7,439.0m²)
 - 2차 사업부지(2003년9월3일 건축허가 2,734.0m²)
 - 3차(2011년11월17일 개발행위허가 485.0m²)
 - 금회 개발행위허가(138.0m²)를 득하고자 할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상인지

【답변내용】

- 2000년 8월 17일부터 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개발사업) 협의제도가 도입·시행되었으며, 당시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조(개발사업의 사전협의를 관한 적용례)에서 “별표2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사전협의를 관하여는 이영 시행후 최초로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동 제도 시행 이전의 허가받은 사업면적은 현행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 비고11에서 규정한 이미 허가를 받은 면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따라서, 2차 사업부지부터 금회까지 면적합이 3,357m²이므로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각 호에 규정한 규모 미만이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3-12. 축사화재로 새로운 허가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

【질의내용】

- 기존 A 목장용지
 - 건축허가 2001년 10월 건축허가 득함(본인 소유)
 - 대지면적 : 2535,00m², 용도 :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 2013년1월29일 일부 무허가 부분이 있어 추인허가를 득함.
- 기존 B 목장용지
 - 건축허가 1996년 10월 건축허가 득함(본인 소유)
 - 대지 면적 : 3,637m², 용도 : 축사
 - 내용 2012년 11월 화재로 인하여 전소된 축사를 철거 후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함.
- 질의내용 : A, B 목장용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고 현재 목장 용지의 추가 확보는 없음. 기존 B 목장용지에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으려 할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답변내용】

- 화재로 인한 재건축의 경우 사업면적이나 지형 등의 변화가 없다면 건축인허가에 관계없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3-13. 2개 이상 인·허가를 수반하는 경우 협의요청 기관

【질의내용】

- 신보령 1,2호기 공업용수 관로 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9조 및 제61조 제2항의 별표4 비고 9에 의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나 신보령 공업용수관로 공급사업은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승인사항이 없다 보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승인 기관이 없으며 개별 허가가 있는 사항임. 도로점용 허가, 하천점용허가가 있는 상태이나 개별 허가기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 하나의 사업이 2개 이상의 인·허가를 수반할 경우 사업규모가 큰 주된 사업 인·허가권자 또는 선행하는 인·허가권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함이 타당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기관은 동 협의내용을 각각의 인·허가 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14. 군관리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승인신청시 개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조치 필요 여부

【질의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2012.7.22.)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하고(2011.5.2 협의통보), 군관리계획(체육시설)으로 결정(2011. 6. 9. 고시)된 사업의 경우 2014. 3월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 사업내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개정된 법률에 의한 행정조치(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등)가 필요한지

【답변내용】

- 귀하께서 2011년 협의절차를 거친 군관리계획(체육시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시행되는 개발사업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4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함.
- 다만,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검토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를 생략 할 수 있음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
 - 아울러, 별표 1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전부를 검토한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생략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일부 또는 전 항목에 대한 협의를 생략한 경우에도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해야 함.

3-15. 불법 축사 양성화에 따른 인허가 행정절차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질의내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가축분뇨의 배출시설과 처리시설등이 5,000m² 이상인 사업장임. 본 사업장은 무허가로 축사를 운영하다 관련기관에 벌금 및 과태료로 처분을 받고 현 상태 그대로 허가를 진행하고 있음. 이런 경우는 현 상태에서 절·성토 추가건축 등이 전혀 없고 현재 상태로 양성화(허가) 절차를 받고 있는데 5,000m²이상이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7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후(12.7.2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면적이 5,000m² 이상이며, 최초 승인등을 신청하는 계획 또는 사업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개발행위가 완료되었다 하여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임.

3-1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대상여부

【질의내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 중 산림경영계획(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에 따라 진행된 벌목행위가 사전공사에 해당되는지
- 또한,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벌목 이후 개별인허가 신청 시 벌목행위가 사전공사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 사전공사 금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에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별표4 각호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에 한해서 사전공사 금지 조항을 적용함
- 그러나, 같은법 시행령 별표4 비고4호에 따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산림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산림자원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를 득한 후 산림자원법 제14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산림자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산림사업으로 볼 수 있음 (산림청 산림자원과 해석)
 - 따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산림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벌채를 사전공사로 간주 할 수는 없을 것임.

3-17. 하천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질의내용】

- 00천은 지난 2001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13년 실시설계를 거쳐 2014년 5월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협의진행 과정 중 지방환경청으로부터 하천기본계획 연한에 대한 실효성여부를 들어 협의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음.
- 상위계획(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거나, 수립연한이 경과된 하천인 경우 반드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하위계획(개별 개발사업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을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 「하천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수립하여야 하나, 수립연한(10년)이 지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근거로 수립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이 유효한지 여부는 관련법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유효여부에 관계없이 하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10,000㎡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의 허가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거치면 될 것임.

3-18. 도시개발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사업전체 면적은 25만㎡ 미만임.
 - 질의① 계획관리지역의 면적 25만㎡ 미만 도시개발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 질의②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면 협의요청시기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전인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전인지
 - 질의③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관리계획을 의제함’이 별표2의 비고1에 해당된다면, 면적 25만제곱미터 항목과 무관하게 도시개발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 질의 ①, ③에 대하여
 - 계획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25만㎡ 미만의 도시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비고3 항목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질의 ②에 대하여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임.

제 IV 장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1. 전략환경영향평가 분리발주 주체

【질의내용】

- 사업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인 ○○회사는 재정악화로 인하여 ○○부동산신탁으로 부터 법적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로, ○○부동산신탁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개발하여 그 이익금으로 자금을 회수하고자 금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략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분리발주 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발주처를 실질적인 토지소유자인 ○○회사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사업시행자인 ○○부동산신탁으로 해야 하는지?
 - 참고로, 개발을 함에 있어서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며 이에 대한 동의는 이미 이뤄진 상태임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사업자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소유 여부와 무관함
 - 귀하의 질의와 같이 ○○부동산신탁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제안하는 등 실제 사업주체일 경우 ○○부동산신탁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분리발주 계약을 체결해도 될 것임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분리 체결 관련

【질의내용】

- 민간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송전선로를 설치코자 하며, 시행은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자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의제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어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 특수목적법인은 설계, 인허가, 환경, 재해, 토지 보상 등 전체에 대하여 툰키로 “A 업체(손실보상 대행 전문회사)”에 위임하였으며, A업체는 설계, 환경 등을 각각 분리하여 발주 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렇게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2항 4호에 의거 분리 발주 위반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사업자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이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과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분리하여 체결해야 할 것임.

3. BTO 방식의 민간사업자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분리발주 가능여부

【질의내용】

-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서 2010.3.11에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완료하여 2013.10.14 착공한 도로사업으로서 사업구간 중 소하천 (1999년 소하천정비) 정비시점이 10년이 경과하여 유로변경을 포함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려고 함.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재수립권자는 00시이나 민간사업자(SPC)에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재수립 및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토록 할 계획임.
- 본 민간사업은 민간이 사업비를 부담하고 준공 후 시설물 및 토지를 00시에 무상귀속하고 통행차량에 대한 운영수입으로 사업비를 보존하는 BTO방식임. 이에, 민간사업자(SPC)는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설계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분리하여 발주·계약하려고 함.
- 이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민간사업자(SPC)와 계약체결하여 진행하여도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4호의 분리발주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제2항 제4호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은 해당사업의 설계 등과 분리하여 발주하라는 취지인바,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더라도 설계등과 분리하여 발주한다면 동 규정위반으로 볼 수 없음

4. 민간제안자 분리발주 여부

【질의내용】

- 유원지조성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사업자)은 당사에서 진행하고 입안은 해당 지자체가 함]을 수립하던 중 유원지 진입도로(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필요하게 되어 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공사 등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하였으나, 용역발주를 위한 시간지연 및 예산문제 등으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서 작성 및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유원지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용역을 발주하고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
- 이에 유원지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 계약(발주)를 하고자 하나,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법」 법 제53조에 의한 분리발주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지
- 또한, 진입도로(도시계획도로)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유원지 조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기는 하나 사업자(도시관리계획 입안자)가 해당 지자체인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발주)를 유원지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가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인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제2항제4호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여기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 는 민간제안자, 또는 당해사업 발주청(행정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누구든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분리계약을 한다면 동 규정 위반이 아님

5. 위탁받은 사업의 분리발주 가능여부 등

【질의내용】

- 본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00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2012년 3월에 00군에서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와 위탁계약을 체결 하였음. 저희는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의 입찰을 통해 “00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2013. 3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과업을 진행중에 있음.
- 질의① 이와 같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발주 받은 사업이 추진 중에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진행해야 할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계약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라 진행이 가능한지
- 질의② 사업자 및 승인기관인 00군은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로 전체과업을 위탁하고,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에서 설계, 환경, 건축 등 과업별로 분리발주 하였으면, 이는 분리발주로 볼 수 있는지

【답변내용】

- 질의 ①에 대한 답변
 -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제2항제4호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용역계약을 해당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사항 등이 발생 하였다면 이는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할 사항으로 사료됨
- 질의 ②에 대한 답변
 -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1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는자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한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촌공사에서 환경영향 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계약체결 하였다면 이는 분리발주로 볼 수 있을 것임.

6. 계약변경 분리발주 가능여부 등

【질의내용】

- 추진경위
 - 2008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 과업 발주
 - 2013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GB해제시 사전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여 GB해제 승인을 받았고 추가로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하고자 함
 - 하지만 발주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하지 못한 상황임
- 이때에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업을 계약변경을 통하여 추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제2항제4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단지 추가지정과 관련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은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계약 하여야 함.

7. 환경보전방안의 분리계약 대상여부

【질의내용】

- 이전 법에서는 분리계약 대상에 환경보전방안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법상에서는 분리계약 대상에 환경보전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경보전방안을 설계 등의 계약과의 분리하여 계약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규정한 환경보전방안은 당해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위해 작성하는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해당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발주 하여야 함.

8.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전·후 턴키사업 분리발주 관련

【질의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시행(2012.07.22) 이전에 총 공사비 개념으로 일괄입찰(턴키발주)로 설계·시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구, 사전환경성검토 비용 포함)를 포함하여 낙찰되었으나, 동 사업에 대한 계약일자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시행 이후(2012.07.22)인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턴키계약과 별도로 분리발주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제2항제4호에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부칙 제1조에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2012.07.22)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바, 동법 시행이후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분리 계약하여야 함.
- 턴키발주의 경우 발주방법의 특성상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함에 있어 개정 전후 차이로 인한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으나, 동 법은 시행일 이전 1년 전에 이미 공포하여 시행일자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발주청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발주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9. 환경영향평가 분리발주 관련

【질의내용】

- 현행의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제2항제4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의 경우 위법사항인지
 - 광역지방자치단체(○○도)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개발공사나 모 단체인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괄 수탁을 받아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각각 분리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통상 국해부의 위탁을 받아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나 철도를 관리하는 철도공사에서 고속도로공사 혹은 철도공사에 관해 (a)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각각 분리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b) 설계는 공사에서 직접 수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업무만 분리해서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초지방자치단체(○○군)와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은 농어촌공사에서 ○○군의 위탁을 받은 농어촌정비사업(설계 및 시공, 감리를 포함한 일체의 공사)에 대하여 ○○군과 일괄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 등은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수행을 하면서, 농어촌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 업무만 분리해서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산림조합법’에 따르면 산림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산림조합이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으로부터 산림과 관련된 사업(예: 자연휴양림 지정 및 설계 등)을 산림조합이 일괄 위탁받아 사업전반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업무만 분리해서 산림조합이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제1항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란 사업자의 지위(사업시행자, 또는 계획수립권자)를 의미하므로 해당기관으로부터 법률(조례 등)에 의거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자가 될 수 있다면 적법한 경우가 될 것이고, 단순 계약에 의해 일괄 수탁받은 경우라면 위법에 해당됨, 후자의 경우 사업자(사업시행자 또는 사업계획 수립권자)가 설계등과 분리발주하여야 함.

10. 사전환경성검토 대행계약 변경시 분리발주 여부

【질의내용】

- 2011년 6월 공공기관과 계약한 ○○통합정수장 및 관로설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2년7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개정되어서 금회 계약변경을 해야 하는바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지 변경계약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다면 당초 내용으로는 통합정수장+관로에 대하여 환경영향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농업전용저수지가 농업+식수(취수)저수지로 변경되어 취수시설에 대한 환경영향검토가 추가되어야 하는 상황임.
 - 취수시설은 수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사업임
 - 농업용저수지일 경우는 환경영향검토가 필요 없었으나 식수(취수)를 하게 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하는 실정으로 통합정수장 사업자측이 원인자가 되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합정수장 사업자측에서 수행해야하는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일(2012.7.22) 이전에 이미 사전환경성검토서(행정계획)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법 시행이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는 동일하면서, 단순히 계약내용만 변경될 경우 분리발주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 기존의 사업자가 아닌 별개의 사업자가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개정된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에 대한 설계 등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작성자는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자는 해당사업을 개발하려는자(사업자)가 될 것으로 보임

11.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분리발주 대상여부

【질의내용】

- 2011년 12월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및 집단취락정비방안 수립 용역'을 최초 계약하여 진행중인 용역을 2012년 12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도로: 녹지지역 1만㎡ 이상) 부분을 추가하였음.
- 여기서, 도시계획 시설결정(도로) 변경계약은 2012년 12월에 체결되었지만, 용역의 최초계약일인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도로 : 녹지지역 1만제곱미터 이상)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분리발주 하지않고 변경계약만을 체결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분리 발주를 하여야 하는지?

《추진현황》

- 2011년 12월 :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및 집단취락 정비방안 수립 용역 최초계약
- 2012년 12월 : 도시계획시설결정(도로) 변경계약
- 2013년 5월 : 도시계획시설결정(도로)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계약(예정)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이라는 범주에 이법 시행일(2012.7.22) 이전에 이미 사전환경성 검토서(행정계획)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법 시행이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변경계약은 분리발주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12.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 인정 관련

【질의내용】

-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인정을 받기 위한 서류 중 용역계약서의 계약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용역계약서에 용역기간을 0000년 00월 00일~과업완료일까지 라고 되어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실무경력 인정을 위한 서류에 계약서와 평가서표지, 참여자 명단, 환경청 협의공문 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주에게 과업완료 확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 인정을 위한 확인서류로는 [환경부 예규 제2012-459호, 2012.8.3] 에 의거 기술용역표준계약서 및 최종 성과품, 실적증명서(원발주처 발행) 등을 활용하는바, 당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됨
 - 질의사항 중 “과업완료일”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협의기관과의 협의공문을 통보받는 시점이 과업완료일자라면 해당사업 계약서와 평가서표지, 참여자 명단, 협의기관의 협의 의견통보 공문서 시행일자로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과업수행 기간 중 과업이 중단된 경우 동 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일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13. 평가업 등록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의 범위

【질의내용】

- 질의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규정의 적용여부
 - <갑설> 60일 이내에 제출은 해당업체에서 규정서류를 발송, 또는 제출하는 날짜를 근거로 판단하여 60일 이내에 법을 준용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위반한 사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관련협회에서 처리기일을 경과하여 관련청, 업자에게 변경등록 통보한 날짜가 60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별표10의 변경등록을 미이행 행위에 포함되지 않고, 법54조의 제출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미제출시 또는 등록기준 미달시 시행령의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을설> 변경등록은 제출과는 무관하며, 업자가 제출한 서류의 흠결유무를 확인하는 검토, 적합유무 등을 판단하는데 소요되는 시일이 있어 최종 변경등록은 제출과는 상관없는 등록일로 적용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검토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변경등록이 60일이 경과되었으면 처분대상임
 - <병설> 변경서류는 변경처리기한인 6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였고 등록에 필요한 검토(처리)기간인 7일을 거쳐 흠결이 없는 경우에는 면허등록 기준일을 제출일 기준으로 처리하여하며, 보완이 필요하여 보완되었으면 보완기준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60일을 초과하였다면 행정처분 대상임
- 질의②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면허관리를 위탁하며 처리지침인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을 예규로 정하여 공포하였는바, 등록신고에 관하여

업자가 제출한 일자와 처리기한을 검토하여 등록일자는 관련법률 및 규정에 명시 되지 않아 혼선이 있어 이에 제출과 등록일자에 관하여 질의함

- <갑설> 업자는 대행업을 하고자 규정에 맞추어 인력과 장비를 구비하여 제출할 때 이미 급여를 비롯한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시점이 제출 당시 이므로 검토하여 흠결이 없는 경우에 관련 협회의 내부사정으로 등록 결정되는 날(결재가 완료되는 날)로 업체를 등록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제출일로 등록하여 주어야 함. 이는 대행업을 하기위한 등록은 신고사항이며, 협회는 신고된 사항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임. 신고는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 또는 관련협회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보고하는 것이며, 등록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단체나 협회에 문서를 올리는 등재행위를 의미함으로 대행업의 등록은 신고에 따른 등록이다. 따라서 등록 신고는 업자의 성립기준일인 제출일에 맞추어 등록하여야 함.
- <을설> 관련협회는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등록 관리하기 위한 처리시간이 필요하며 검토 후 최종 확인하고 제출일 당시 흠결이 없음을 확인하고도 관련협회 내부사정으로 처리기간이 경과되고 결재가 종료되어 확인완료 한 날로 등록하여야 함.

【답변내용】

○질의①에 대하여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제2항 및 시행령 제69조제2항에서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등록한 사항중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 변경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

- 합한 경우에 변경등록신청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등을 거쳐 동 사항이 충족된 서류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됨. (행정절차법 제40조 규정 참조)

※ 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 ③ 행정청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 따라서 변경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기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흠결이 있는 동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같은기간 내에 보완하지 못할 경우 같은법 제58조제1항 제6호의 행정처분 및 제76조제3항제8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 제58조제1항제5호에 의한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임.

○ 질의②에 대하여

- 일반적으로 등록이란 일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증하기 위하여 행정관서나 공공기관에 비치한 법정 공부에 기재하는 사항을 의미하는바, 접수기관에서 변경등록서류를 접수·검토 후 최종결재(확정)한 날짜를 등록일자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임.

14. 제1종 및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자연환경분야의 경력인정 여부

【질의내용】

- 생물학과 석사를 졸업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중 자연생태 환경 분야에 5년간 근무 경력이 있으며, 현재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이직을 하였음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경우 학력·경력자는 '2)관련 전공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을 기술자격자 대체로 인정해 줌. 그리고,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경우 책임조사원급의 학력·경력자는 '2)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임.
- 질문내용은 '1종의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과 '2종의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 1종 자연생태환경분야에서 5년간의 경력이 2종 책임조사원의 경력이 인정되는 것인지, 또한 2종에 종사하면서 쌓이는 경력이 1종의 경력으로도 인정이 되는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의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서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자연생태환경 조사 경력으로 인정하는 업무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자연생태환경분야 기술인력의 환경영향평가 실무 수행 경력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시행령 별표5 비고3,4 참조)
- 따라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여 자연생태 환경 분야의 작성·검토·협의 업무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다면 자연생태환경 조사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상기업무를 수행했다면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자연생태환경분야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할 것임.

15. 기술인력 상시근무의 의미는

【질의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가목을 보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음. 여기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의미인지? 맞다면, 단시간근로자(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됨)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에 해당되는지? 아니라면 1일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는지?

【답변내용】

- “상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명확한 용어의 정의는 없으나, 환경영향평가업에서 기술인력의 상시 근무에 대한 입법취지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업무의 전념성이 요구되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겸직 또는 시간제(기간제)근로, 임시근무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상시근무하는 사람이란 소속회사에서 항시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됨.

16. 대체 기술인력 실무경력인정 사유

【질의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 2. 가"와 관련하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중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필요인원은 기술사 자격소지자, 박사학위 취득후 4년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석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등으로 표기되어 있음.
 - 박사학위 취득후 4년 이상 평가실무를 수행한 사람은 무슨 사유로 4년으로 결정한 것인지
 - 석사학위 취득후 7년 이상 평가실무를 수행한 사람은 무슨 사유로 7년으로 결정한 것인지
 - 학위를 취득하기 전 평가실무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유는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관련 별표5에서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의 인정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학력·경력자의 인정범위는 기술자격자 즉, 기술사 자격소지자와 유사 등급의 인정범위로 다른 법령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있음
 - 예를 들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서는 기술사를 특급기술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기사 자격소지자의 경우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경우 고급기술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사급에 해당하는 석사 학위 소지자에게는 7년 이상을, 박사 학위 소지자는 학위 취득기간 등을 감안하여 4년 이상의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기준을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만 인정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일정 자격(학위)을 취득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실무경력을 수행한 자를 요구하는 것이며, 대부분 다른 법률에서도 실무경력의 인정은 자격증 취득후로 규정하고 있음

17. 기술인력 등록관련 1/2의 의미는

【질의내용】

- 기술인력 기준(별표5)에 [비고6. 구분별 동일자격의 기술자격자(기사)는 필요인원의 1/2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생활환경(가목1인/나목3인)의 경우 전체 4인에 대한 1/2인지, 나목 3인에 대한 1/2 인지? '구분별'이라고 규정해 놓았으니 생활환경의 전체 4인인 경우로 산정하여야 하는게 맞지 않은 것인지

【답변내용】

- 2012.7.22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면 개정·시행되면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에 의거 구분에 따른 분야별 필요인원은 기술사급, 기사급으로 나누고 있음.
- 질의하신 별표5 비고6의 '구분별 동일자격의 기술자격자(기사)는 필요인원의 1/2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별표 5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의 기사급의 분야별 필요인원(동일종목 기술자격자)에 대하여 1/2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임.
- 다시 말해 기사급에 해당하는 필요인원(동일종목 기술자격자)이 2명의 경우 1인, 3명의 경우 1.5인 즉, 두 경우 모두 동일종목 기술자격자를 등록할 수 없다는 의미임.

18. 평가업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기존에 체결한 업무 가능여부

【질의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57조 환경영향평가업의 폐업·휴업을 할 경우 폐업·휴업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업무는 해당업무가 끝 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59조에서 평가업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동 처분을 받기 이전에 계약한 사항은 해당업무가 끝날 때까지 그 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서는 부정확한 방법으로 동 평가업을 등록하거나,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동 처분에 계약한 것이라도 그 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며,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폐업·휴업한 경우에는 동 폐업·휴업 이전에 계약한 사항을 계속할 수 없음.

19.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관련

【질의내용】

- 질의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시 기술인력 10인을 등록하였고, 업무 필요상 기술인력 자격을 갖춘자를 추가로 채용하여 업무에 종사시 이 기술인력을 추가로 변경 등록을 하여야하는지?
- 질의②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시 시설 및 장비에서 환경기준의 항목 전체를 측정·분석할 수 있는 A사와 측정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등록을 하였고, 업무 필요상 측정일정 중복 등 필요에 따라 B사에 측정의뢰할 경우 B사를 추가로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질의③ 환경영향평가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회사 사정상 일시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업무를 휴업을 할 경우 휴업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업무는 해당업무가 끝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 질의①에 대하여
 - 환경영향평가업 제1종 등록시 기술인력 10인은 최소 등록요건이므로 반드시 이를 충족하여야 업 등록이 가능하며, 추가로 기술인력을 채용할 경우 동 채용인력의 기술인력 등록여부는 자율적인 사항임.
- 질의②에 대하여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시 측정·분석 관련 사항을 대행계약으로 충족한 경우 대행계약자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 질의③에 대하여
 - 환경영향평가업을 자진휴업 또는 자진 폐업한 경우 그 이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업무는 계속 수행할 수 없음.

20. 환경영향평가 대행업 인력

【질의내용】

- 환경영향평가서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환경영향평가 등록기준 인원 최소 10인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평가등록 기준에 적합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평가서를 작성 가능한지
- 환경영향평가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평가서의 참여자로 작성이 가능한지
- 환경영향 평가서 참여기술 인력 등록자 중 총괄, 자연생태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등 구분되어 있는 부분의 참여기술자들이 중복 작성자로 가능한지 여부(예를 들어 자연생태환경분야에 기술 인력이 등록되어 작성하는 자가 총괄자로, 또는 생활환경 분야에 등록되어 작성하는 자가 토지환경 분야를 함께 중복 작성 가능한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업에 분야별로 기술인력을 정한 것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분을 한 것임.
- 따라서, 분야별로 등록된 기술인력이 전문성을 갖고 해당분야를 작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타분야 인력 또는 등록되지 않은 인력은 각 분야의 보조업무나 등록기준에 없는 평가항목에 대하여는 참여가 가능할 것임.

2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관련

【질의내용】

- 질의①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현장조사는 하지 못하고 사무실 내에서 현장조사 내용을 몰라도 작성이 가능한 간단한 자료정리(기상자료, 환경질 측정자료 등), 수질오염총량서류 작성, 보고서 편집, 제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과업수행참여자 명단에 참여기술자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3조 별표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 판단기준”의 “1.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중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 에 해당되는지?
- 질의②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에 있어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으로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기술인력(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일부 작성하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자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 질의①에 대하여
 -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2], 1,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라 함은 문구 그대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를 의미하는바, 환경영향

평가서 등에 대한 참여부분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작성·제출하였다면 이는 거짓작성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 어느 분야의 작성자로 되어 있고 동 분야에 대한 기초자료에 대하여 별도의 하도급이나 조사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동 분야에 대하여는 현황조사, 평가·분석까지 모두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기초자료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거짓작성에 해당될 수 있음.
- 이에 대한 사항은 `13.9.6에 모든 환경영향평가업체에 안내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기술인력 참여자 및 기초자료 보관에 대한 안내'(국토환경정책과-1451)를 참고하시기 바람.

○ 질의②에 대하여

- 환경영향평가업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면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로 충분한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참여하고 동 평가서 작성자(참여자)명단에 포함하였다면 이는 불법은 아니나, 환경영향평가업에 소속된 직원이면서 기술자격(학·경력 포함)을 갖춘 자라면 기술 인력으로 먼저 등록하고 평가서 작성 등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22. 평가업 기술인력이 부동산 임대업 겸업가능여부

【질의내용】

- 현재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환경영향평가업체에 근무하고 있음. 직장에 다니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개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함.
 - 4대 보험의 문의결과 개인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등록처리를 한다고 함(세무서 제외).
 - 직장에 다니면서 임대사업자를 하고자 할 경우 이 조항에 위반이 되는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은 이중취업 금지 및 상시근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위한 취지인 바,
 - 환경영향평가업의 근무시간에 항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하다면 개인 임대사업은 이중취업 금지 및 상시근무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23. 대학원 재학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등록가능여부

【질의내용】

-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다른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 대학원 재학중인 사람도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 취업한 상태인지, 석박사 과정 중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른지, 전일제 또는 파트타임제에 따라 다른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은 이중취업 금지 및 상시근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위한 취지인바, 환경영향평가업의 근무시간에 항상 근무하면서 야간이나 주말 등 이용한 대학원 재학은 가능할 것임.

24.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겸업가능 여부

【질의내용】

- 한 회사에서 인력을 구성하여 1종과 2종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체를 등록하여 1종팀, 2종팀으로 현재 인력이 구성되어있음.
- 이럴 경우, 1종 회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발주 받아 일을 할 때 당연히 생태계는 2종 팀에서 수행하게 되어있는데, 같은 회사 2종 팀이 1종팀의 생태계 일을 수행 할 때도 하도급 계약서를 맺어야 하는것인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부실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마목에 따라 동일인이 제1종 및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을 각각 등록 할 수 있음.
- 따라서, 동일 회사에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마목에 따라 각각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어 제1종과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하였다면 부서간 별도의 하도급 계약체결 없이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등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임.

25.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관련

【질의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과 관련하여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업체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신고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명시된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 중복 등록'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라목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예외적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사무소의 경우에만 중복등록을 인정해 주고 있음.
- 따라서,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등록을 한 경우는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음.

26.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요건

【질의내용】

- 질의①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기술인력은 엔지니어링진흥법의 기술인력에 신고도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바,
 - 환경영향평가 과업을 수주를 못하여 그 기술인력들이 일부는 환경영향평가부서에 근무를 하고, 일부는 다른 사무실에 근무를 하면서 일이 있을시 공조하여 과업을 수행을 하고 있다면, 환경영향평가부서에서 근무하지 않고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일부인원은 기술인력이 없다고 보는게 맞는 것인지?
- 질의② 환경영향평가부서 신고는 한곳밖에 안된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는 것인지?

【답변내용】

- 질의 ①에 대한 답변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관련 별표5에 따라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함.
 - ‘상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명확한 용어의 정의는 없으나, 환경영향평가업에서 기술인력의 상시 근무에 대한 입법취지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업무의 전념성이 요구되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겸직, 시간제(기간제)근로, 임시근무 등을 제한하고 상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부서에서 근무하지 않고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일부인원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질의 ②에 대한 답변

- '환경영향평가업 소재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교부 후 아래와 같이 관리되고 있음
- 주사무소소재지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본점을 말하고
- 평가담당부서소재지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을 전담하는 부서의 소재지를 말하고 있어 면허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 시 기준이 됨
- 따라서, 평가담당부서소재지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을 전담하는 한 곳으로 지정되어야 함이 타당 할 것임

27. 사업자간 환경영향평가업의 양도, 양수 가능여부

【질의내용】

-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있고,
 - 3월 13일에 입법예고된 법(안)에는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등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고 구체화 되어있음
- 질의① 사업자간 제1종환경영향평가업을 양도·양수(권리와 의무 승계)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② 양도인이 현재 수행중인 사업 및 종전의 대행 실적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인지?

【답변내용】

- 질의①에 대한 답변
 -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는 환경영향평가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세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상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양도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사업자간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양도·양수가 가능함
- 질의 ②에 대한 답변
 - 양도인의 대행실적은 승계될 수 있으나, 현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업 양도·양수인 간의 합의와 평가대행을 의뢰한 사업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임

28.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기준 관련

【질의내용】

- 별표5 기술인력기준의 '토지환경' 분야에 2명 이상을 등록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저희는 '토양환경기사 1인 + 관련 전공 석사 학위자 1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 질의① '토양환경기사 2인'으로 변경 가능한지?
 - 질의② '토목기사 1인 + 토목산업기사 1인(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자)'로 변경 가능한지?
 - 질의③ 기술자격 인정범위를 환경분야일 경우에는 '토양환경기사'로만 국한되어 있는데 학력자 인정범위로는 '토양을 전공한 석사'가 아니라 '환경을 전공한 석사' 이상은 모두 가능하다는 말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내용】

- 질의①에 대한 답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 비고6에 따르면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등록은 구분별 동일자격의 기술자격자(기사)는 필요인원의 1/2을 초과하여 등록 할 수 없음. 따라서 토지환경분야에 토양환경기사를 2인을 등록(변경) 할 수 없음.
- 질의②에 대한 답변
 - 같은법 시행령 별표5 비고6은 동일자격의 기술자격자(기사)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토목기사 1인 및 토목산업기사로서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 1인으로 등록이 가능할 것임
 - 다만, 법의 개정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등록하시기 바람.

- 질의③에 대한 답변
 - 현재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기술자격자와 학력·경력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 ‘기술자격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로,
 - ‘학력’의 경우 표준 학과명을 기준으로 해당 분야와 연관성을 고려하여 종목 및 학과를 분류하였고, 도시계획학, 토목공학, 지질학, 자원공학, 환경학, 환경공학 등을 토지환경분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전공들은 학문적으로 토지환경분야에서 다뤄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관련 전공으로 규정하고 있음.

29. 육아휴직에 따른 기술인력 변경여부

【질의내용】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기술인력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동 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까지는 기술인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할 것임.

30.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취소 관련

【질의내용】

- 환경영향평가업 면허를 반납(폐업)할 경우 처분이전 체결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반납(폐업)후에는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59조에 따르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 계약에 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해서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과업을 계속해서 수행 할 수 없음.

31. 해양환경조사 하도급 관련

【질의내용】

-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해양환경분야의 주요 하도급 내용은 ①환경질(해양수질,퇴적물) 조사분야, ②해양물리(부유사, 조류, 파랑 등) 관측분야, ③해양생태(플랑크톤, 조간대생물, 어류 등) 조사분야, ④수치모형실험(부유사확산, 해수유동 등) 등임
- 질의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0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에 의하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업의 시설 및 장비기준과 유사함. 환경질 조사분야의 하도급시 반드시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를 통해서 시행해야 하는지
- 질의②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에 해양물리 관측분야의 조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경우도 엔지니어링 기술분야(해양, 항만 및 해안)로 등록하고 장비를 갖춘 별도의 조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를 통해서 조사를 시행해야 하는지
- 질의③ 수치모형실험(부유사확산, 해수유동 등) 분야는 본 규정 [별표] 업무분야의 4. 해양환경조사에 포함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업무분야 13.기타항목으로 보면 되는지

【답변내용】

- 질의①에 대한 답변
 -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 환경질조사는 측정대행업체에 직접하도록이 가능함.
- 질의②, ③에 대한 답변
 - 기타 해역에서의 해양환경조사와 조사결과의 분석·평가가 이루어지는 분야에 대하여는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에 위탁하여야 할 것임.

32. 해양환경분야 하도급 관련

【질의내용】

-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하도급 할 수 있는 업무 및 하도급업자의 요건"에 관한 규정 중 해양환경 조사의 경우 해양환경 조사의 업무범위가 궁금함.
- 해양환경의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업체나 2종 대행업체(해양 생태계에 한함)로 명시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해양생태계 전문 조사업체의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업체나 2종 대행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외 해양수질, 해양 퇴적물, 해양물리 조사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업체들의 경우 일반적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업체나 2종 대행업체 면허가 없는 업체들이 많고, 또한 해양수질, 해양퇴적물, 해양물리의 경우 일반적인 육상기준의 평가업 2종 업체가 조사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이 경우 해양수질, 해양퇴적물, 해양물리 등이 하도급에서 규정하는 해양환경조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함. 만약 포함된다면 하도급 규정에 의한 업체들에게만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하도급 할 수 있는 업무 및 하도급업자의 요건에 관한 규정' 에서 해양수질, 해양퇴적물, 해양물리, 해양생태 등은 해양환경조사 범위에 포함되어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된 업체에서 할 수 있으며, 해양생태조사는 환경영향평가업 2종 등록업체에도 하도급 할 수 있음.

33. 평가법 개정 전 생태조사 계약사항을 종전법에 따라 제2종 평가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 2013.7.22 이전 A건에 대하여 환경측정분야와 자연환경분야를 B 업체에 하도급하여(계약기간 5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2013.7.22부터 시행되는 자연생태조사업무에 B업체가 여건상 제2종 등록이 불가능 한 경우 중도타절 후 제2종 등록업체에 한하여 계약변경(자연환경분야)을 시행하여야 되는지?
- 아니면 계약변경이 없이 B업체가 자연생태조사업무에 한하여 제2종 평가업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후 A건에 대하여 조사업무를 계속 수행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서 제68조제4항에 관한 사항은 2013.7.22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3.7.21일 이전에 계약한 사항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종전에 계약자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경우 1년 단위로 보고서가 제출되고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4년 이후 진행되는 자연생태환경조사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업체에게만 하도급을 하여야 할 것임.

34.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초자료 보관·관리 범위 관련

【질의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3항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 질의①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가 기초조사 자료까지 포함되는지?
 - 질의② 만약 환경질 측정 및 동식물상 외주처리시 환경평가업체가 기초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외주업체가 기초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 질의 ①, ②에 대한 답변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입력한 모든 기초자료는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됨(언제든지 확인·열람가능).
 - 환경질 측정 또는 동식물상 조사 등을 측정대행업체 또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체에 외주 처리한 경우 환경부고시(2012-8호, 2012.1.20) “평가서 등의 작성 기초자료에 대한 범위 및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에서 현장조사 참여, 외주관리와 관련한 기초자료는 제1종업체에서, 외주받은 업체는 외주 수행과 관련한 기초자료를 보존·관리해야 함.

35.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하도급 관련

【질의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는 ‘환경영향평가 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고 열거되어 정의되어 있음
- 이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사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제1종 등록업체는 제2종 등록업자에게 도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제’하는 한편, 동법 시행령 별표 5에는 제1종, 제2종으로 구분하여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의 기준을 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음
- 질의①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위의 ‘환경영향평가 등’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본 법에 의한 규제, 즉 등록하여야 하고, 제2종 등록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위와는 반대로,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본 법에 의한 규제대상에 포함된다면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 질의② 본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21일 이전에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7월22일 이후에 계속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경우 기존 조사업체가 여건상 제2종 등록이 어려울 경우 제1종 업체는 계약을 중단하고 제2종 등록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하여야 하는지? 위의 답변이 ‘그렇다’고 한다면,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업체와의 계약을 제1종 업체가 중도에 소급하여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 있으며, 또한, 신의와 성실로써 계약을 이행해 오던 기존 조사업체의 보호방안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내용】

○ 질의 ①에 대한 답변

-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1항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로 되어 있고 동 항 제2호에 사후환경영향조사서가 제시되어 있음.
- 따라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업체에게 하여야 하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가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하도급을 할 경우도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체에게 도급 하여야 함.

○ 질의 ②에 대한 답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12.7.20)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한 것은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준비기간과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고려한 것이며,
- 법 운영과정에서도 개정법령 시행(13.7.21) 이전에 계약된 환경영향평가 자연생태환경분야 하도급에 대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유권해석을 통해 동 환경영향평가 건에 대하여는 기존에 계약된 업체를 인정 하도록 한바 있음.
-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하여도 개정법령 시행 이전에 계약된 하도급에 대하여는 13년도 조사까지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체가 아니어도 기존의 하도급업체를 인정하도록 하였음.
- 다만,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년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4년도 조사부터는 법령에서 정한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체만 자연생태환경분야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6.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하도급 관련

【질의내용】

- 자연생태환경의 조사·예측·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함.
 - 첫째, 제26조(하도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생태환경의 조사, 자연생태환경의 영향 예측·평가 및 자연생태환경 보전방안(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2종 환경영향평가 업체외에 상시근로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연생태환경 분야 전문가(대학교수, 박사 등)들도 동식물상에 대한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하도급 할 수 있는지?
 - 둘째, 자연생태환경의 조사에 대한 원내역의 최소 80%를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집행하도록 권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어길 시에 법적인 강제력과 처벌내역이 있는지?

【답변내용】

- 2013. 7.22부터 자연생태환경영향조사는 제2종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한 업체에만 하도급이 가능함.
-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운영지침”상 분야별로 원도급 금액의 80% 미만인 경우를 저가하도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저가 하도급으로 분류될 경우 거짓·부실작성의 개연성이 크므로 이를 집중검토 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짓·부실이 발견될 시는 처벌은 물론 평가서 보완 또는 반려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

37. 사후환경영향조사 자연분야 도급가능 여부

【질의내용】

- 본 사후 조사는 10년단위로 계약되어 있으며, 2013년 1월 계약을 하였으며, 2종 환경영향평가 사업자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데, 2014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외부전문가를 제외하고 2종 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만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 2종 사업자 구성인력 중 해당분류군(예: 조류, 양서파충류) 전문가가 없을 경우 다른 2종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대행계약을 10년간 하였다 하더라도 매년 조사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의거 2013.7.22부터 자연환경분야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한 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재 하도급은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분야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다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체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받는 형식은 가능할 것임.

38. 환경영향평가대행업의 측정하도급

【질의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가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분석을 하도급할 시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시 측정대행계약을 맺은 업체에만 하도급을 할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는 하도급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별표5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측정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험실 및 장비를 갖추지 않도록 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서는 환경영향업등록시 측정대행계약 내용을 첨부하도록 하여 등록증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평가업자는 계약한 측정대행업자에게만 측정대행을 하도급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하나의 평가업자가 여러 개의 측정대행업자와의 측정대행계약은 무방하며, 이에 대한 추가 등록은 환경영향평가협회에 쉽게 할 수 있으니 해당절차를 거친 후 하도급을 하시기 바람.

39.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기초자료 보존 이행주체 등

【질의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기초자료를 일정 기간동안 보존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기초자료의 종류와 범위는 ‘1.환경현황분야’와 ‘2.생태계분야’로 구분되는데,
 - 질의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에 따라 자연 생태환경의 조사·예측·평가 및 보전방안을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생태계분야’의 기초자료는 해당 분야의 수행주체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보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만 보관하면 되는지 아니면 중복하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도 함께 보관하여야 하는지?
 - 질의② ‘질의 ①’에서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만 보관하면 된다면,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폐업할 경우, 그 보관주체에 대한 의무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로 승계되는지?

【답변내용】

- 질의 ① 에 대한 답변
 -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의미하는 것임

- 다만, 자연생태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도급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도 위와 같은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같은 자료를 중복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질의 ②'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같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질의 ② 에 대한 답변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폐업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 등을 위해 최초 도급을 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관련 자료를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함.
- 참고로, '환경부고시 제2012-8호'는 2013.12.27 부로 폐지되었으므로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71호(2013.12.27.))」를 참고하기 바람.

40.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하도급 할 수 있는 업무 및 요건

【질의내용】

-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하도급 할 수 있는 업무 및 하도급업자의 요건에 관한 규정」 별표 9호 및 11호에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가 빠져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영향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빠져 있으므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함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하도급 할 수 있는 업무 및 하도급업자의 요건에 관한 규정」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전문성·기술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관한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 환경분야 중 대기·수질·소음·진동의 예측, 모델링 등에 대해서만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음
- 하도급은 전문성이 있는 업체, 기관 등에 주는 것이 원칙이며, 대기·수질·소음·진동의 예측, 모델링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가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기타 분야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제외한 것임.
 - 또한 모든 항목을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에 하도급 할 경우 일괄하도급 등 시장질서 교란,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작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부 항목을 한정하여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람.

41. 자연생태환경 업무 하도급 관련

【질의내용】

- 2013년 7월 22일 이전에 00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사후 환경영향조사의 자연생태환경분야에 대해 용역수행 중에 있으며, 00대학교의 경우 현재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 이럴 경우 기존 00대학교와 중도타절 하고 제2종 등록 업체에게 용역수행을 실시해야 하는지
- 환경부 유사민원 공개내용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용역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21일 이전에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유지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4항 및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평가를 2013년 7월 22일부터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도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후환경영향조사 또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자만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자연생태환경 분야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용역의 경우 조사·작성 및 제출에 별도로 정해진 기간이 없이 건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협의완료 시 까지(보통 1년 이내 소요) 용역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2013년 7월 22일 이전에 자연생태환경 분야에 대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 계약업자가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하지 못하더라도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 사후환경영향조사도 같은 이유로 2013년 말까지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자연생태환경분야 하도급을 인정하였으나,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년 단위로 작성되어 협의기관에 제출되고 계약 또한 1년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2014년 조사부터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야 함.
-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 기존에 자연생태환경분야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가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1조)한바 있어 기존의 미등록 업체가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였다면 등록요건을 갖추어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하였어야 할 것임.

42. 하도급업자의 요건에 관한 규정

【질의내용】

-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하도급 할 수 있는 업무 및 하도급업자의 요건에 관한 규정」 별표의 하도급 할 수 있는 업무 및 하도급업자의 요건 '5. 토양오염도검사' 중
 - '나'조건에서 말하는 측정대행업자는 일반적인 측정대행업자를 지칭하는 것인지?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측정·분석 할 수 있는 자는 단순히 토양분석 인력과 장비를 갖춘 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하도급 할 수 있는 업무 및 하도급업자의 요건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를 의미함.
- 단순히 토양분석 인력과 장비를 갖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대행업자 중 토양분석 인력과 장비를 갖춘자를 의미하는 것임.
 - 예를 들어 수질분야로 등록한 측정대행업자는 보유한 장비를 이용하여 토양항목에 대한 분석이 가능 할 것이나, 소음·진동 분야로 등록한 측정대행업자는 분석 및 조사항목의 특성상 보유한 장비를 이용하여 토양분석을 할 수 없을 것임.
 - 이러한 경우에는 소음·진동 분야의 측정대행업자에게는 하도급을 할 수 없고 수질분야 측정대행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음.

제 V 장

환경영향평가사

1. 환경분야의 범위

【질의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6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 중 “환경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에서 환경분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조경기사 및 조경관련 업무 또는 녹지 관련 업무가 이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 질의하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6에서 “환경분야 기사 자격”의 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 자격의 직무분야 중 환경·에너지 분야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서 환경·에너지 분야의 유사 직무 분야에 해당되는 조경기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환경분야 기사 자격”의 범위에 해당될 것임.
-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6에서 “환경분야 실무”의 범위는 실제 환경보호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질의하신 녹지 관련 업무가 녹지보호를 위한 업무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환경분야 실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2. 환경영향평가의 실무범위

【질의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6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분야 실무”란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환경분야도 포함하는지
-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는 무엇을 구비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6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에서 “환경분야 실무”라 함은 환경영향평가 실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한 모든 환경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함.
-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무분야가 명시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될 것임.

3. 별표8 제1호 및 제2호 모두 해당되는 경우의 과목면제

【질의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8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자격 및 기준 중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될 경우 면제받는 과목은 어디까지인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시험 응시자는 일정 경력을 갖춘 경우 제1차 시험과목 중 최대 2과목까지 면제가 가능함.(제1차 시험 합격자 중 제2차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다음 2회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면제).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8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자격 및 기준의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각 호의 면제과목 중 응시자가 판단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 자격만을 신청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 해당 여부

【질의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8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분야 실무경력”에서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해당되는 범위는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개정 전 사전환경성검토/사후환경영향조사 실무경력이 모두 해당되는 것인지
- 실무경력 인정방법은 발주처별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원(과업참여자) 상의 참여일수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의 분야별 참여일수 중 어느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 질의하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8에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분야 실무경력”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실무경력과 함께 법 개정 이전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에 따라 실시한 사전환경성검토 실무경력도 포함됨.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일부면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방법은 발주처별 기술용역이행증명원(과업참여자) 상의 참여일수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의 분야별 참여일수 모두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중복일수 제외), 이 방법으로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기술인력으로 등재되고 협의가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참여일수(평가서 작성기간이 아닌 실제 참여일수를 말함)를 인정받으실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분야 실무경력 인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업 관리를 담당하는 환경영향평가협회(02-573-4100)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5. 학경력자의 과목면제

【질의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8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기준과 관련하여 학경력자로 대체기술사인 경우 과목면제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질의하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8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과목 및 기준은 법령 개정 작업 시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각종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 평가,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하여 타 자격증의 사례와 형평에 맞게 결정된 사항임.
- 법령 개정 당시 학경력자에 대한 자격시험 일부 면제 가능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진행되었으나, 기술자격자를 대치하는 개념인 학경력자 대체기술사 도입취지와 타 법령 등의 사례에 비추어 자격시험 일부 면제가 곤란함

제 VI 장

산업단지 · 농공단지 통합지침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여부

【질의내용】

- 농공단지에 입주한 일반 폐수배출시설 신고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먹는물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이 된다면 농공단지 통합지침 제36조에 따른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입주 또는 증설을 하기 전에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제4항제2호에 따라서 배출시설설치허가권자(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음
-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다목에 따라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용수에만 포함되어 있고 그 용수의 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고 농공단지통합지침에 따른 입지제한도 받지 않음

2. m-아미노 페놀 등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해당여부

【질의내용】

- m-아미노 페놀, p-아미노 페놀을 소량으로 사용할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해당되어 농공단지 입주가 제한되는지

【답변내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 페놀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페놀류는 수천가지이며, 모든 페놀류를 각각 검출할 수 있는 시험방법은 국내외적으로 없음
- 이에 환경부에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검출되는 경우, 페놀류로 규제하고 있어 질의하신 물질이 페놀류에 해당하는 지는 동 실험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3. 농공단지 기입주업체의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여부

【질의내용】

-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증설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를 받기 위해서 농공단지 통합지침 제36조제4항에 따라 환경청장과 협의해야 하는지
- 이 경우, 기존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의 농공단지 입주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허가여부를 최종결정 하여야 하는 것으로 환경청 협의대상이 아닌 것인지

【답변내용】

- 사업장의 입주 또는 증설로 인해서 해당 시설이 방지시설 없이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통합지침 제36조에 따라서 유역(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나,
- 기존 사업장이 사전에 협의 없이 증설, 원료·부원료·제조공정 등의 변경사유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이미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동지침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배출되고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환경청장과의 협의는 실익이 없음
- 협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배출시설설치 허가권자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9항에 따른 기준 및 통합지침 제36조제4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배출시설 설치를 허가할 수 있음
-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인 경우에는 동법 제44조에 따른 폐쇄조치 취하고 배출시설설치 허가권자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도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농공단지 지침 제36조 제4항)할 경우, 사업장 폐쇄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4. 산업단지 통합지침 제14조제1호마목의 의미

【질의내용】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제1호마목의 의미는?

【답변내용】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제1호마목*은 산업단지내에 매립의 방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부지는 매립완료 후 녹지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통합지침 제14조제1호가목의 녹지비율에 포함됨

* 제 14조제1호마목 :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립의 방법에 의한 처리시설에 한하며, 매립완료 후 녹지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와 개발지구 내 중요유적이 출토되어 사적(史蹟)으로 보존될 경우에 동 지역을 가목의 녹지비율에 포함한다.

5. 폐수전량위탁의 경우 농공단지 입주여부

【질의내용】

- 철강선제조업체가 폐수를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 폐수를 전량위탁처리하는 방법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제4항제2호에서 정한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농공단지 입주가 제한됨
- 다만, 전량위탁처리에 의하지 않고도 농공단지 통합지침 제36조제4항제2호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음

환경영향평가등
질의회신 사례집

